이젠 국산 "꽃"도 원산지표시 꼭 하세요!



국산 농산물: 220품목(농축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)

신규 지정 품목 절화류 11품목: 국화, 카네이션, 장미, 백합, 글라디올러스, 튜울립, 거베라, 아이리스,

프리지아, 칼라, 안개꽃

약용작물류 · 채소류 3품목 : 백수오, 쑥, 순무(포장된 것)

*법적근거: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 ('17년1월1일 시행)

※ 표시대상자 :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출하거나 판매(통신판매 포함)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·진열하는 모든 사람

로 표시방법 ①

표시기준

• 국산은 "국산(국내산)" 또는 "시 · 도명", "시 · 군 · 구명" 외국산은 수입통관 시의 "해당 국가명"을 표시

(예시) 장미(국산), 백합(국내산), 순무(강화군), 백수오(경상북도), 카네이션(중국산)

표시방법

▶ 포장재에 표시하는 경우 : 제품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거나 지워지지 않은 잉크·각인·소인 등을 이용하여 표시

표시 위치	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		
표시 문자	한글로 표시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 가능		
글자크기	⊙ 포장 표면적이 3,000㎡ 이상인 경우 : 20포인트 이상		
	© 포장 표면적이 50cm² 이상~3,000cm² 미만인 경우 : 12포인트 이상		
	© 포장 표면적이 50㎡ 미만인 경우: 8포인트 이상 (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 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)		
글자색	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		

[※] 포장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의미함.

▶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: 푯말, 안내표시판, 일괄안내표시판, 스티커, 꼬리표 등을 이용하여 표시

구분		제작 크기 기준
푯 말		가로 8cm×세로 5cm×높이 5cm 이상
안내표시판	진열대	가로 7cm×세로 5cm 이상
	판매장소	가로 14cm×세로 10cm 이상
스티커(상품에 부착)		가로 3cm×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.5cm 이상
일괄 안내표시판		가로 14cm×세로 10cm이상,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 *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는 사용 불가



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

○ 공통사항

표시문자

한글로 표시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 가능 *매체 특성상 문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"말" 로 표시

글자의 위치 · 크기 · 색깔 소비자가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

*"말" 로 표시할 경우는 말의 속도 및 소리의 크기는 제품을 설명하는 것과 같아야 함

▶ 통신매체별 표시방법

구분	전자매체 이용 (인터넷, PC통신, 케이블TV, IPTV, TV 등)	인쇄매체 이용(신문, 잡지 등)	
표시 위치	원칙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허용: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 이용 가능	원칙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 허용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	
표시 시기	대상 제품이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부터 표시	-	
글자 크기	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*글자로 표시할 수 없을 경우(라디오 등) 1회당 원산지를 두번 이상 "말" 로 표시	원칙: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1/2이상 허용: 광고 면적 기준 8~20포인트 이상 *농축산물 포장재 표시기준 준용	
글자색	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와 같은 색		

🗓 위반자 처벌사항

▶ 원산지 거짓표시의 처벌기준


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(상습위반자: 1년이상 10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)

*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: '17.6.3시행



위반금액의 5배 이하(최고 3억원 이하)

*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한 경우



농관원, 농식품부, 시·도, 시·군, 한국소 비자원,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공표(영업소 명칭, 주소, 위반내용 등)



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교육 3개월 이내 이수

*'17.5.30.시행

▶ 원산지 미표시 등 과태료 부과기준

구 분		부과기준
· 미표시 .	과태료	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	위반업체 공표	미표시 2회 이상 위반시(공표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)
	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	미표시 2회 이상 위반시 3개월 이내 원산지표시제도 교육 이수 *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표시방법 위반		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/2
조사거부 · 방해		100~500만원 이하의 과태료